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2. 7. 13.(수) 10: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32차, 제3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보고사항

가. 2022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가> “2022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2022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평가개요입니다. 대상기간은 평가시행 전년도 2021년 1월 1일~12월 31일 해당 실적분이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실시간 TV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 중에서 2021년도 방송실적분이 10개월 이상인 채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대상 구분입니다. 방송사업자의 규모, 방송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방송채널을 크게 ‘가’ 그룹과 ‘나’ 그룹 두 그룹으로 구분한 후, 각 공급분야 특성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하겠습니다. ‘가’ 그룹은 재허가·재승인 방송사업자와 계열관계에 있거나 대규모 PP가 운영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나’ 그룹은 ‘가’ 그룹에 속하지 않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공급분야 ‘1’은 시의성 있는 경제정보 중심 채널이고, ‘2’는 오락적 예능프로그램 중심 채널입니다. 공급분야 ‘3’은 교양 생활정보 채널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자원·과정·성과경쟁력을 총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평가하겠습니다. 다음 평가결과 산출입니다. ‘가’ 그룹과 ‘나’ 그룹 내 각각 공급분야별로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결과는 ‘가’ 그룹과 ‘나’ 그룹 내 공급분야별로 상위 2개 등급인 ‘매우 우수’, ‘우수’ 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채널을 공개하겠습니다. ‘매우 우수’ 등급 채널에 대해 ‘우수채널’ 선정마크를 부여하고,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여하겠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방송콘텐츠제작역량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올해부터는 유료방송사가 PP채널 계약에 활용하는 PP평가항목에 「방송콘텐츠제작역량평가결과」를 6% 공식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개선 필요사항입니다. 공적채널이 운영하는 공적채널의 공익성 및 공적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공적채널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23년 해당 실적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이 매년 해온 것을 하는 것이지요?

○ 박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매년 기본계획을 연초에 하고 있고, 이번 평가기본계획에서 개선되는 사항은 올해부터 유료방송사가 PP채널 평가할 때 저희 평가결과를 6% 공식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유료방송사에게 권고해서 케이블사업자라든지 또 IPTV나 LGU+ 정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모든 유료방송사가 PP채널 평가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그동안 없었는데 내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평가받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진희 편성평가정책과장

- 저희 콘텐츠제작역량평가가 2012년도부터 도입되고 10년 동안 PP채널을 평가하고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적채널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평가를 받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채널도 공적 기능이라든지 공적 역할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번 국정과제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는 공적 채널 대상, 실질적으로 공적채널이 어떻게 공익성을 또는 공적 기능을 제고하고 있는지 성과 위주로 새롭게 평가항목을 개발해서 평가방안을 연말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의견 없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제가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위원회 담당 위원장입니다.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평가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그리고 공적채널제작역량평가 그 부분을 역점적으로 보고 이번에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지난해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공적 채널들에 대한 평가가 일반PP와 채널 간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물적자원 경쟁력의 자기자본 비율은 공적채널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평가가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애초 제도 운영의 취지인 일반PP들도 우수한 방송콘텐츠를 생산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고 그런 정책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평가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나.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나>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필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2021년 10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 계획’의 후속조치로, 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 등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강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0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방송 고시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이후, 방통위는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 연구반을 구성·운영하여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동 고시 개정내용을 포함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고, 금년 5월에는 2022년도 세부추진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6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사전협의를 거쳤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 조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장애인단체 요구, 장애인방송 편성실태, 정부지원 예산, 시청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상파·중편PP·보도PP에 대해 우선적으로 편성비율을 5%에서 7%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입니다. 실질적인 화면해설방송 확대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재방송 비율 규제가 있는 지상파·중편PP·보도PP에 한하여 화면해설방송의 재방송 비율을 30%에서 25%이하로 축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시에 대한 수정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고시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청각장애인으로 장애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폐쇄자막·화면해설방송 등이 보편적인 시청서비스로

인식되도록 특정장애 관련 문구를 삭제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한 고시 의무사업자의 지정·공표에 관한 규정만 있는 현행 고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장애인방송 고시 의무사업자가 등록취소, 폐업·휴업 등으로 방송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규칙 일몰조문에 대한 근거규정에 따라 기존 제16조(규제의 재검토)를 제16조(재검토 기한)와 제17조(규제의 재검토)로 조항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동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위원회 보고 이후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9월에는 위원회의 결을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고시 일부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 해설방송의 재방송 비율을 30%에서 25%로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강필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지금 화면해설방송이 재방송 때도 화면해설방송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10%가 넘게 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잘 못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까?

○ 강필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지금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을 10%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 재방송 비율을 5% 축소할 경우 10.4%까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재방송 비율을 축소해서 화면해설방송의 본방송 비율을 늘린다는 것입니까?

○ 강필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시지요?

○ 김효재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방통위가 지난 5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세부추진계획에서 밝혔던 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과 또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를 위한 고시개정안인데, 미디어 격차 없는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해 올해 세부추진계획 13개를 당시 약속한 바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부위원장

- 지금 '화면해설방송 확대 편성'이라는 표현이 저도 굉장히 헛갈립니다. 이 문장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보고받을 때도 '화면해설방송 확대 편성', '재방송 비율 축소'가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고민해 봤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표현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을 놓고 일반인들이 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답변하시겠습니까?

○ 강필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방송사에서는 화면해설방송을 하나 제작해서 두 번 세 번 방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규정으로는 편성비율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만든 것을 두 번 세 번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실제 화면해설방송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 안형환 부위원장

- 그런데 화면해설방송을 만들었으면 방송사 입장에서 보면 화면해설방송을 만들어서 이것을 재방송해서 생기는 이익보다는 그 화면해설방송과 상관없이 오리지널 프로그램이 경쟁력이 있고 시청률이 높으면 재방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 강필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제 재방송을 전부 다 하면 현재 10%인데 재방송을 전체 하면 실제 제작하는 화면해설방송 편성비율이 5%밖에 안 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러니까 이것을 규칙이나 다른 방식으로 화면해설방송을 늘리라고 해야지, 만든 것을 방송하지 말고 다른 것을 늘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머릿속에서 감이 오지 않습니다.

○ 강필구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다시 재방송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여기 문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질문의 취지를 바꿔보겠습니다. 화면해설방송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재방송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화면해설방송을 만든 프로그램을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재방송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제하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재방송 문제는 본방송을 재방송하는 경우에 화면해설방송은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예를 들면 재방송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극단적으로 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화면해설방송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돌려도 10%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 재방송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비율을 30%까지 인정해 줬었는데 그 인정하는 비율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칙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셨지만 재방송이 화면해설방송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본방을 재방송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납득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안형환 부위원장

- 일단 전제는 우리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일수록 화면해설방송을 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기 있는 방송이 있으면 계속 재방송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기 없는 프로그램인데 이미 화면해설방송을 제작해 놓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재방송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기 없는 방송을 화면해설방송의 비율을 채우기 위해 재방송을 한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재방송한 것으로 카운팅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 표현이 약간 요령부득입니다.

○ 김영관 방송기반국장

- 방송사가 화면해설방송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틀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25%까지만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화면해설방송으로 제작되어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틀어도 상관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한정 인정해 주지 않겠다, 인정하는 비율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본방은 계속 늘어나더라도 화면해설방송의 비율을 30%에서 25% 축소하면 5% 만큼 화면해설방송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되었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3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18분 폐회 】